

주재관 정원표(제52조제2항 관련)

구분	총계	특정직	일반직				
			소계	고위공 무원단	3급 또는 4 급	4급	5급
계	353	82	271	33	17	191	30
경찰	77	77					
고용노동	7		7			7	
공공행정·안전	7		7		1	5	1
공정거래	4		4	1		3	
과학기술·정보통신·방송	16		16	2		14	
관세	11		11		1	9	1
교육	8		8	1	1	6	
국세	8		8		1	7	
국토교통	14		14	1	1	12	
농림축산	11		11	2		9	
문화홍보	42		42	9	4	28	1
법무·법제	5	5					
보건복지·식약	9		9	2	1	6	
산업통상자원	52		52	4	2	41	5
재정경제금융	22		22	9	4	9	
조달	2		2			2	
출입국	32		32			13	19
통일·안보	6		6		1	5	
특허	6		6			6	
해양수산	8		8	1		4	3
환경	6		6	1		5	

비고

1. 주재관(문화원장 직위는 제외한다)으로 보할 수 있는 경력직공무원의 종류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.
2. 경찰 분야의 특정직 정원 77명 중 4명은 경무관으로, 17명은 총경으로, 2명은 경정으로, 54명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하되, 이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3. 교육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정원 1명은 장학관으로, 4급 정원 6명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.
4. 법무·법제 분야의 특정직 정원 5명은 「검사정원법」 제1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검사 5명을 파견받아 보하되, 이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